의안번호	2212286
의 뢰 인	이연희의원
회 답 일	2025. 9. 15.
추계번호	25C4499
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사진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7,000만원(연평균 3,4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○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
○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60					60	12
실태조사 (안 제6조)	110	-	-	-	-	110	22
합계	170					170	3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사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・시행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및 사진서비스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진진흥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・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정책의 수립・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・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7조(사진 창작 등의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진창작자 및 사진창작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·단체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사진에 관한 연구·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5	안 제9조(기술개발 및 디지털사진 신뢰체계 구축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, 사진작품, 사진산업 및 사진서비스업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·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, 박람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사진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○	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	
3	안 제7조(사진 창작 등의 지원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4	안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5	안 제9조(기술개발 및 디지털사진 신뢰체계 구축 지원)	×	- 현시점에서 지원대상 확인 불가
6	안 제1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제정안의 일부 조항(안 제7조 및 안 제10조)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8조)과 관련하여서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을 근거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

○ 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-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(단위: 백만원)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5년)
안 제7조(사진창작 등의 지원)	- 전속작가제 지원(4,150) * 미술 분야 대상, 사진 포함 -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(1,070) * 미술 분야 대상, 사진 포함 - 작가 온라인 플랫폼 지원 (300) * 미술 분야 대상, 사진 포함
안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6조(전문인력 양성) -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(552)
안 제1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- 한국미술해외시장개척지원(900) * 미술 분야 대상, 사진 포함 - 한국미술해외쇼케이스(4,570) * 미술 분야 대상, 사진 포함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사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❑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사진 진흥을 위하여 사진의 창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
❑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
❑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6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○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만화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만화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4년도에 6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60	-	-	-	-	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6조)

❑ 제정안은 사진 진흥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환경,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
○ 창작 환경,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, 제정안 시행 첫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연구비 등으로 5년마다 1억 1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문학진흥법」 제6조에 따른 문학실태조사를 위하여 2025년에 1억 1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4]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실태조사(안 제6조)	110	-	-	-	-	1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❑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